

제 14 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

경제적 여건 계산 방법

[2014 년도 가을학기 파견 대비]



※ 제출서류 발급처

	구 분	대 상	서류명	발급처	기준연도
1	연소득 (택1)	자영업자	소득금액증명원	세무서	2011년, 2012년
		직장인 (택1)	소득금액증명원	세무서	
		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근무처(회사)	
		무소득자	사실증명	세무서	2012년
2	건강보험료	1. 건강보험증 복사본 2.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		건강보험공단	2014.1월~3월 (2013.12~2014.2)
3	재산세	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		주민센터	2013년

□ 인터넷 및 FAX 발급, 원본 스캔 파일형식 모두 서류 제출 인정

□ 각 항목별 아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,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

□ 재산세의 경우,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아닌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제출

□ 연소득 또는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(주부, 농수산업, 종교인 등의 경우에 해당)

□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는 납부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, 과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세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

□ 부모님 이혼의 경우,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만 제출 (이혼사실 증빙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함)

□ 현재 본인의 부양자가 재혼한 경우, 재혼한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도 제출

□ 부모님 사망의 경우, 경제적 여건 서류 증빙 제외

(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가 표시되지 않음으로 사망 확인 가능)

1. 연소득 계산 방법(부/모)

가. 직장인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회사발급) 또는
소득금액증명원(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, 세무서발급)

관리번호	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지급조서 (소득자 보관용)		거주구분	거주지 ① / 비거주지 2
			내-외국인	내국인 ① / 외국인 9
			외국인단일세율적용	여 1 / 부 2
			거주지역	거주지역코드
영수증의무지	(1)법인명(상호)	(주)미래전자	(2)대표지(성명)	김미래
	(3)사업자등록번호	000-00-00000	(4)주민(법인)등록번호	000000-0000000
	(5)소재지(주소)	서울 동로구 미래동 00-0		
소득지	(6)성명	김교한	(7)주민등록번호	800000-1000000
	(8)주소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아파트 1동 101호		
(9)거수연도	2009-01-01 부터 2009-12-31 까지		(10)관련기간	
구분	구분	주(원)	종(원)	합계
	(9)근무처명	(주)미래전자		
	(10)사업자등록번호	000-00-00000		
	(11)근무기간			
	(12)관련기간			
	(13)급액	30,000,000	0	30,000,000
	(14)상액	5,000,000	0	5,000,000
	(15)인정상액	0	0	0
	(15-1)주식매수선택권행사금액	0	0	0
	(15-2)사우주조환인출금	0	0	0
(15-3)				
(15-4)				
(16)계	35,000,000	0	35,000,000	

- 산출방법 : 급여총액 + 상여총액
-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함

예) 계산예시
30,000,000 + 5,000,000 = 35,000,000
(급여총액) (상여총액)

나. 자영업자 : 소득금액 증명 (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세무서 발급)

발급번호	4000-000-0000-000		소득금액 증명	처리기간
	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자용	즉시
주소	서울 동작 ***** ** * * * * *			
성명	홍길동	주민등록번호	540804-10*****	
(단위 : 원)				
소득구분	원천징수의무자	소득금액	총결정세액	
귀속연도	법인명(상호) 사업자등록번호	(과세대상급여액)		
종합소득세		5,882,770	120,731	
2009				
	합계=>	5,882,770	120,731	

예) 소득금액 합계
5,882,770

다. 무소득자 : 사실증명 (세무서 발급)

- 무직자, 주부 등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(예, 농수산업, 종교인 등)
(단, 일용근로소득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지원서에 기재)

발급번호	A000-000-0000-000		사실 증명	처리기간
				즉시
납세자	① 주소 또는 거주(법인은 본점소재지)	서울 영등포 여의도 미래아파트 1동 101호		
	② 사업장소재지			
	③ 상호(법인명)			
	④ 사업자등록번호	⑤ 전화 번호		
	⑥ 성명(대표자)	김미래	⑦ 주민(법인)등록번호	480805-1000000
	⑧ 사용 목적 기타	⑨ 수량	1	
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대리인 인력사항	성명	주민등록번호	전화번호	납세자와의 관계
	김장학			
증명받고자 하는 내용	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, 근로(사업)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. (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)			

증명내용

2. 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

가. 가입자(세대주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(건강보험공단 및 인터넷 발급)

나. 계산 방법

- 월건강보험료 = 최근 3개월분 고지금액 ÷ 납부개월수
- ※ 장기요양보험료, 연말정산 금액은 합산 제외
- ※ 최근 3개월은 2014년 1월, 2월, 3월임
(2013년 12월 또는 2014년 4월분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을 계산하여도 무방함)

<예시> 월 건강보험료의 올바른 산출 방법

건강·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				
발급번호 : 00-00000000-0000000		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보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요양보험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건강· 장기요양보험료		
가입자 명칭	홍길동	주민등록번호	650605-1*****	
사업장 명칭	(주)미래전자	납부자번호	00000000000	
2012년 01월 ~ 2012년 12월 건강·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내역				
월별	고지금액		납부금액	
	건강보험료	장기요양보험료	건강보험료	장기요양보험료
1월	216,820 원	14,200 원	216,820 원	14,200 원
2월	216,820 원	14,200 원	216,820 원	14,200 원
3월	216,820 원	14,200 원	216,820 원	14,200 원
4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5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6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7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8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9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10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11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12월	229,560 원	15,030 원	229,560 원	15,030 원
연말정산	184,080 원	8,790 원		
납부 총액	건강보험료		2,900,580 원	사용목적 납부확인용
	장기요양보험료		186,860 원	
	합계		3,087,240 원	

계산 : 650,460 원 ÷ 3 개월
= 216,820 원 (원미만 절사)

- ※ 기타 유의사항
-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증 기준으로 복사본 제출 및 납부확인서 발급
-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하여 복사본 제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/출력 (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, 재발급시 가족대리인 가능,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)
-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가입자(세대주)의 명의로 발급
- 의료급여증 보유자는 의료급여증 사본만 제출 (지원신청서 보험료란에 숫자 '0' 기재)

다. 상황별 보험료 제출 및 지원서 기재 방법

CASE		제출서류
1	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모든 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 : 부, 피부양자 : 모+본인	건강보험증 : 복사본 납부확인서 : 세대주명의로 발급 지원서기재 : 부-계산금액, 모-'0'원 기재
2	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모든 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 : 본인, 피부양자 : 부모	건강보험증 : 복사본 납부확인서 : 제출하지 않음 지원서기재 : 부/모 '0'원 기재
3	부/모/본인 모두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이 있는 경우 세대주 : 부, 모, 본인	건강보험증 : 부/모/본인 각각 복사본 납부확인서 : 부/모 각각 발급 (본인제외) 지원서기재 : 부/모 각각 계산금액 기재
4	부모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이 있고, 본인이 한쪽에 등재 세대주 : 부/모, 피부양자 : 본인(부의 피부양자)	건강보험증 : 부/모 각각 복사본 납부확인서 : 부/모 각각 발급 지원서기재 : 부/모 각각 계산금액 기재
5	부/모/본인이 형제자매 혹은 친족의 피부양자인 경우 세대주 : 형제자매 혹은 친족, 피부양자 : 부모, 본인	건강보험증 : 해당 세대주 복사본 납부확인서 : 제출하지 않음 지원서기재 : 부/모 '0'원 기재
7	건강보험증이 아닌 "의료급여증" 보유자	의료급여증 : 복사본 납부확인서 : 제출하지 않음 지원서기재 : 부/모 '0'원 기재
8	직장변동, 퇴직 등으로 현재와 기준시점에서 세대주 및 피부양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	건강보험증 : 현재 기준으로 복사본 납부확인서 : 2013.6~2013.8 기준으로 발급 지원서기재 : 부/모 각각 계산금액 기재

3. 재산세 계산방법 (부/모)

-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아닌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제출

가. 부/모(명의별 각각)의 201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를 발급 (주민센터 발급)

※ 부/모의 실제 거주 주소와 관계없이 소유 재산(주택, 건물, 토지)에 대한 모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

나.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 상의 항목 중 재산세 주택(건물, 토지)에 대한 과세금액만 합산

※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하여 계산

※ 주민세, 취/등록세, 자동차세 등은 합산 제외 (주택, 건물, 토지만 합산)

다.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: 내용증명 (재산세가 없는 경우 부/모 모두 발급)

<예시> 재산세 계산방법 (토지와 건물도 동일하게 계산)

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						처리기간
발급번호 : 2012-000000						즉 시
납세 의무자	주소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아파트 동 1호101				
	주민(법인)번호	000000-0000000	성명(법인명)	홍길동		
영업장소						
상호	영업종목	사용목적				
과세물건	마두동 000 00동 504호[2기분] (외 1건)					
세 목	년 도	기 분	과세번호	세 액	비 고	
재산세(주택)	2011	정기분(09월분)	163646	136,760		
지역자원시설세(특부)	2011	정기분(09월분)	163646	2,210		
지방교육세	2011	정기분(09월분)	163646	14,050		
소 계	마두동 000 00동 504호[2기분]			153,020	원납	
재산세(주택)	2011	수시분(07월분)	000069	136,760		
지역자원시설세(특부)	2011	수시분(07월분)	000069	2,210		
지방교육세	2011	수시분(07월분)	000069	14,050		
소 계	마두동 000 00동 504호[1기분]			153,020	원납	
합 계				306,040		

계산 : 136,760 + 136,760 = 273,520

<예시> 미과세의 경우

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						처리기간
발급번호 : 2012-000000						즉 시
납세 의무자	주소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아파트 동 1호101				
	주민(법인)번호	000000-0000000	성명(법인명)	홍길동		
영업장소						
상호	영업종목	사용목적				
과세물건						
세 목	년 도	기 분	과세번호	세 액	비 고	
2011년 ~ 2012년 재산세, 재산세(건축물), 재산세(선박), 재산세(항공기), 재산세(토지), 재산세(주택) 과세(납세)사실 없음						증명내용